

노사협의회(연구원발전협의회) 현황

2016. 4. 8.

1. 관련 규정

-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/ 연구원 연구원발전협의회 운영규정

2. 구성 및 기능

- (위원 구성) 사용자위원 / 근로자위원 각 5명

-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: 근로자가 선출
-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: 원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자

- (위원 임기) 3년 (연임 가능, 후임자 선출시까지 계속 직무 담당)

- 협의회 기능

-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연구원 경영에 관한 사항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보고
 - 협의 ·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안전 상정 및 처리
- (고충처리)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을 협의회 위원 중 구성

* 고충의 범위 : 법규정, 절차에 정하여진 연구원 업무 및 생활에 관련된 사항,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

3. 운영 방법

- (회의)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,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 개최
- (회의 성립 및 의결)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,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(의사진행은 매 회의 시 윤번 교대로 운영)
- (회의결과 공개) 회의결과를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